

본 지침은 코로나19 감염병 종결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으로
건설공사장 여건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 건설공사장 대응 지침

2020. 6. 26.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 목 차 -

I. 일반 사항

1. 목 적	6
2. 적용 범위	7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지침 목록	7
4. 코로나19관련 정보	8

II.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요령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10
2.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14
3.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16
4.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19
5.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발주자, 원도급사, 현장소장 등)	20

III. 참고자료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24
2.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예방수칙)	26
3. 환경 소독 방법(예시) (예방수칙)	27
4.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29
5. 휴가 및 휴업관리 관련 참고 법령(관련법령)	30
6. 코로나19 행동수칙(홍보 및 교육용)	31
7.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32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홍보 및 교육용)	36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37
10.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39

IV. 각종 서식(일일 체크리스트 등)

1. 코로나19예방 관련 일일 체크리스트(사업장용)	42
2. 건설공사장 출입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	43
3. 소독 실시 대장(사업장 방역관리자 작성용)	44
4.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	45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46
6.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48
6-1.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49
7.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표(현장점검시 체크용)	51

I . 일반사항

1. 목 적

2. 적용 범위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지침 목록

4. 코로나19 관련 정보

1. 목 적

- 본 지침은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설공사장 방역담당자, 공사감리(현장소장 등), 공사감독관 등의 역할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
- 본 지침은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만 제시한 것으로 건설공사장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특성 >

○ 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감염)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감염)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8-1판

2. 적용 범위

- 도시기반시설본부내 모든 공사장 근무 노동자
- 건설공사장 및 근로자 현황(2020. 6. 20 기준)

근로자(일 평균)			건설공사장(102개소)							
계	내국인	외국인	계	토 목	건 축	설 비	방재시설	도철사업	도철토목	도철설비
4,186	3,386	800	102	23	18	28	13	5	4	11

※ 총800명(중국 181, 베트남 63, 캄보디아 143, 미얀마 175, 태국 179, 스리랑카 52, 기타7)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지침 목록(참고)

지침명	관련부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제3-3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8-1판)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1판, 2판)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대책(제3판)	환경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제5판]	국토교통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본 운영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해당 지침 변경 시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위 지침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장 여건에 따라 적용 운영한다.

4. 코로나19 관련 정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 · 질병 코드 : U07.1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 -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
1)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4일 (평균 4~7일)
2)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 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3)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4)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증 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 ·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
5)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치명률은 5.69% (WHO, 6.11 기준), 우리나라는 2.31% (6.11 기준) · 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
6)관리	<p><환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또는 시설격리하여 다른사람에게 감염 차단 · 표준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준수 <p><접촉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격리하여 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
7)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 없음 · 예방행동 수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올바른 손씻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② 기침 예절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④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간 간격 2m 유지 - 특히 밀접, 밀집, 밀폐된 장소 가지 않기 ⑤ 마스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 간 간격 2m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하기

Ⅱ.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요령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2.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3.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4.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요령]
5.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통)조치사항

□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공사장내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 출입자 관리, 위생 및 환경관리,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등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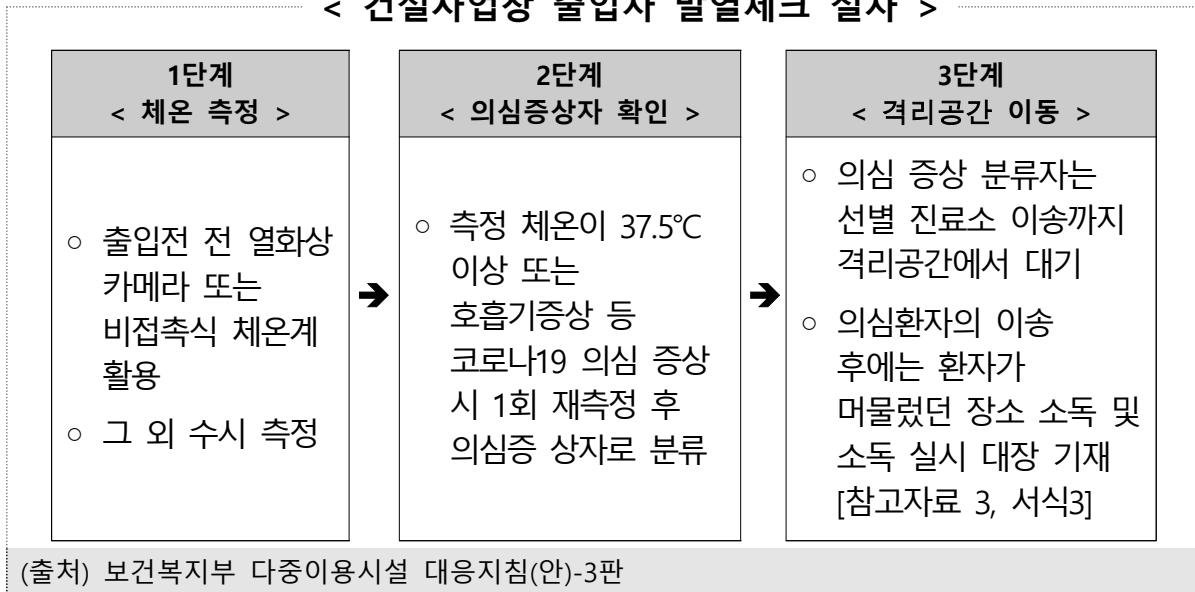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역할

- (지 정) 건설사업장별 방역관리자 1명이상(팀단위 지정도 가능)
- (역 할)
 - ①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사업장·시설 등의 밀폐도, 밀집도 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 및 세부 방역관리 지침 마련
 - ② 방역지침에 따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③ 노동자에게 방역지침을 주기적으로 교육, 이용자에게는 안내하고 관련 내용 게시 등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수행
 - ④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은 개선방안 예시 등 참고하여 사업장 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
 - * 사업장·시설 책임자가 방역관리자인 경우, 책임자가 개선방안 마련·실행
 - ⑤ 동일 장소 또는 동일 작업공간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검사를 받도록 안내, 유증상자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 신고
 -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및 지역보건소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 건설공사장 모든 출입자 발열검사 실시

- 열화상카메라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비접촉식 체온계를 열화상카메라로 대체 가능
 - ① 1차 체온 측정 결과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된 경우 안정을 취한 후 재측정
- 재측정 결과 반복하여 37.5℃ 이상 발열이 확인되면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격리공간에서 대기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도록 안내
 - ② 발열검사 시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여부를 함께 확인

< 건설사업장 출입자 발열체크 절차 >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일 1회 이상) 실시
 - 소독을 실시한 경우, 소독 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감염관리책임자가 서명하여 보관 [서식 3: 소독실시 대장]
 - 문손잡이, 난간, 책상, 의자, 탁자, 전화, 컴퓨터 등은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해야 함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와 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 수시로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알코올 70% 이상), 종이타월 등을 확인하여 충분히 채움
- 주기적인 환기(1일 2회 이상 권고) 실시
 - ①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항상 열어두기
 - ② 창문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③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할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참고자료 2 : 다중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참조]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수칙의 “에어컨 사용” 지침에 준수하여 가동
 -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 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
 -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실시

< 에어컨 사용 일반 원칙 >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
 (실내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자주 환기
 (풍향·풍속)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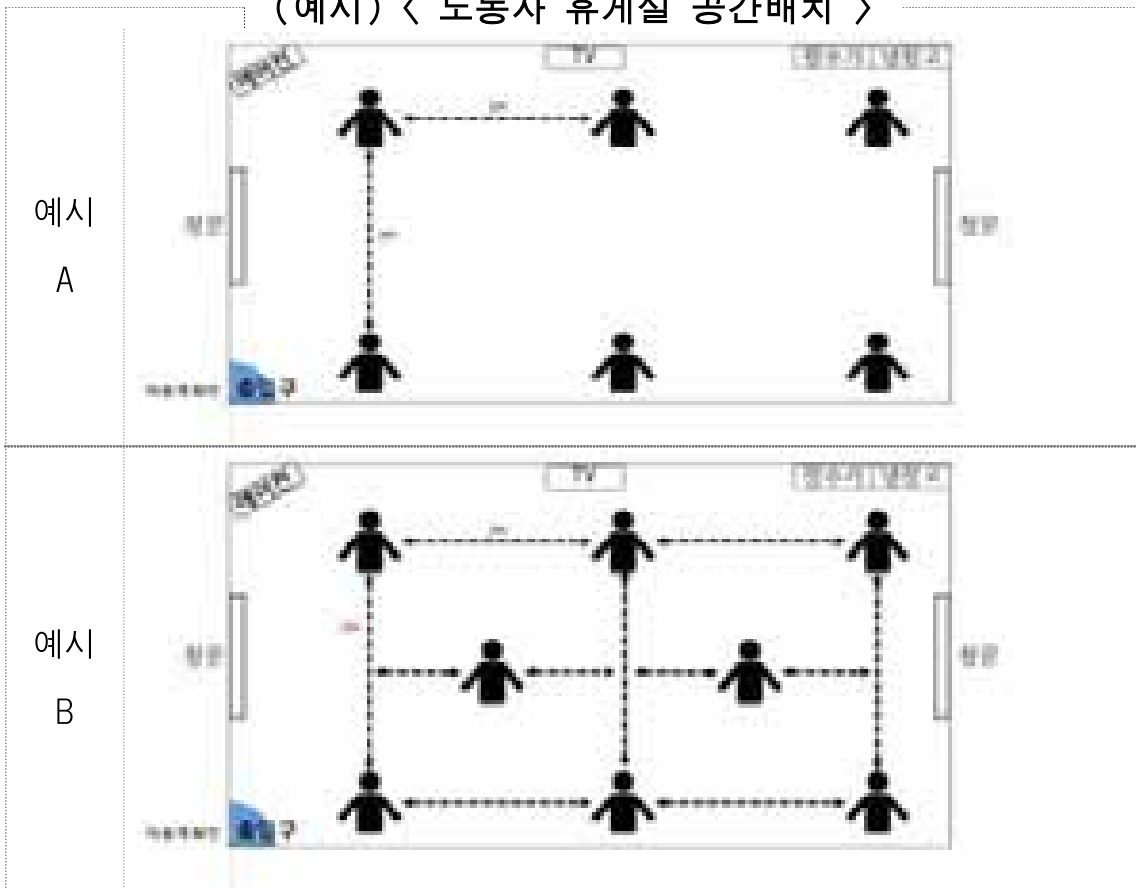
(출처)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수칙 중 “에어컨 사용” 지침

- ④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하루에 1회 이상 시설 내 소독 실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

- 다중이용 시설 최대 이용가능 인원의 50% 이하로 운영하기
- 휴게시설 등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생활 환경 개선
-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금지하기
- (의심환자 발생시) 마스크 착용 후, 선별진료소로 이송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일반 노동자와 접촉금지)

(예시) < 노동자 휴게실 공간배치 >



※ 행정안전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임시주거시설, 지진대피장소 등에 관한 운영지침(2020. 6월)」중 15페이지 '무더위 쉼터 공간배치' 반영

□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 건설현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질병정보 제공, 개인방역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등), 생활 속 거리두기 행동수칙 교육 [참고자료 1~10.]

2. 사업장의 구내식당, 탈의실, 휴게실 등 집중 관리 실시

- 사람 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공용 공간 이용시 마스크 착용,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주기적 환기 및 표면소독 등 방역 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공용시설 집중관리 내용>

▶ 구내식당

- 구내식당 종사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1일 2회 이상)
-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손 접촉이 많은 장소나 물건은 집중 소독
- 1회용 비닐장갑,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치
- 구내식당 내 밀집도를 고려해 점심시간을 시차 운영하고, 식사 시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
(시차제 운영 예시 : 11:30~ 12:30, 12:00~13:00, 12:30~ 13:30)
- 한 줄 앉기를 위한 좌석재배치 및 칸막이 설치
- 배식·퇴식시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간격유지
(스티커 등으로 간격표시)
- 식당출입 및 퇴식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외부식당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음식점·카페』 수칙 준수 [참고자료1]

▶ 탈의실

-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 휴게실

- 여러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고,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거리유지 가능하도록 테이블 배치 조정 등), 휴게실 이용시 마스크 착용
- 손이 자주 닿는 탁자, 의자, 정수기 표면 등은 소독(일 1회),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 개인컵, 개인수저 등 사용안내,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사용시 소독철저

👉 폭염시 실외 그늘막 추가 설치, 건축물내 실내공간 등을 적극 활용 휴게공간 추가 확보

▶ 근로자 숙소

-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인실을 운영할 경우에도 가능한 밀집도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 유증상자 발생 등에 대비해 기숙사 내에도 별도 격리 공간 마련
- 숙소 내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 외출 후 기숙사 복귀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
- 숙소 사용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특별 교육 실시
 - 주기적인 환기, 기침예절준수, 불필요한 이동 자제 등

▶ 교육장

- 교육 참석자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이상 유무 점검
- 교육담당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교육 참석자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교육참석자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좌석을 배치·지정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육참석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 교육장내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 강의실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불가능한 경우 교육 시작 전, 충분한 환기 실시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교육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등은 자제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운영

▶ 샤워실

- 사람간 2m(최소1m)이용 가능하도록 관리,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 이용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는 자제토록 관리
- 락커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표면 소독(일 1회이상) 및 주기적 환기(일 2회이상)

▶ 통근차량

- 1일 2회 이상 차량 소독 실시(손이 자주 닿는 손잡이·좌석 등받이 등 소독)
-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1일 2회 이상)
-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운행 전·후 환기 실시
- 탑승자에게 차량 내 떨어져 앉기·대화 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안내

3.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 감염신고

-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

◆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의심환자 격리

- 의심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격리공간 확보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와 접촉한 노동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를 청소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동자 및 접촉자는 우선으로 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

- 현장 내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 사용 가능
 - *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당일 사멸하나, 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 간 사용 금지
 - 확진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동선이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관리 등은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
 - *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거나 신고·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능동감시 대상
-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지기간 판단
 -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

□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기재부, 2.12)」에 따라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

-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 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

□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 지급

*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수당 지급 필요 (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

4.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사업장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행동 요령

즉시 해당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사업장 조치전까지 대기)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사업장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포함)



사업장 내 **전체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 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C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질병관리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을 실시 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장소 사용 가능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

5.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일일, 수시, 필요시)

□ 예방 단계

구 분	내 용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수시)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비상대응계획 수립(수시) - 근로자 출역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수시) - 위생물품 구입,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수시)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수시) - 원도급사·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확인(수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필요시) (보고서식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원도급사, 현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수시) - 코로나19예방을 위한 항목별 이행사항 점검(일일) (서식1 : 코로나19예방 관련 일일 체크리스트) - 공사장 외부출입자 체온측정 등 건강상태 확인(일일) (서식2 : 건설공사장 출입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 - 현장노동자 출입 시 체온측정 등 건강상태 확인(일일) (서식4 :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작성) -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수시) -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수시) (참고자료 6~10 :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일일) - 위생·방역물품 비치(마스크, 손세정제, 열화상 카메라 등)(일일) - 식당, 화장실, 샤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일일) (서식 3 : 소독실시 대장 - 사업장 방역관리자 지정 등)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 점검 실시(수시) (서식6, 6-1 :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외1)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 실시(수시) (서식 5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하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수시) -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일일) -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수시) -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일일) -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일일) -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일일) -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수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출근 시 기침·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일일) -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일일)

□ 사후조치 단계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

구 분	내 용
발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 의심환자·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현장 내 접촉자, 환자 동선 조사 보고 -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
원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 의심환자,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 협회 등에 상황 공유 -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 현장 전반에 대한 방역·소독 등 시행 -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 공사중지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접촉자 특별관리
현장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통보 -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 현장 출입통제
하도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노동자에게 통보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

Ⅲ. 참고자료

[참고자료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참고자료 2]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예방수칙)

[참고자료 3] 환경 소독 방법(예시) (예방수칙)

[참고자료 4]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참고자료 5] 휴가 및 휴업관리 관련 참고 법령(관련법령)

[참고자료 6] 코로나19 행동수칙(홍보 및 교육용)

[참고자료 7]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참고자료 8]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홍보 및 교육용)

[참고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참고자료 10]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포스터(홍보 및 교육용)

참고자료 1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음식점 · 카페/스터디카페

1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식당, 카페 등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 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기
- 식사를 할 때는 대화를 자제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주문 등 이용하기
- 술잔 권하지 않기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 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계산 시 비대면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고객과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 탁자 사이 간격을 가급적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고정형 탁자 일부를 사용 금지 등 탁자 간에 거리를 두는 방법 마련하기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로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대규모 행사 개최 자제하기
- 가능한 포장 및 배달 판매 등을 활성화하기
-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사자 교육 실시하기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 1m간격을 두고 대기하도록 안내하기
-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도록 개인 접시와 국자, 집게 등을 제공 하기

참고자료 2 다중이용시설 등 에어컨 사용 수칙

F4 일반원칙

- (기본 방향)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
- (환기)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
- (풍량)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

F5 다중이용시설 사용 시

-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
-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
- 기계 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
-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 하기
-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
-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
-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
 -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최소 일 1회 이상) 실시하며,
 -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 출입관리를 강화하기

F6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

【일상적인 소독 방법】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고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70%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겂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음(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 500ppm 희석액 1000ml 제조방법: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5%) 10ml + 냉수 1000ml 채우기
-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 다만, 과도한 소독제 사용으로 인해 인체에 위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불쾌한 냄새로 인한 두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환풍기를 사용할 것을 권고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

-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 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 미흡하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하지 않음

3.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4. 청소·소독 실시한 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소독 방법】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 * 상황에 따라 고글, 안면보호구 및 일회용 방수성 앞치마 등을 추가로 착용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예, 가정용 락스)
3.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4. 소독 구역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준비된 소독제로 바닥을 반복해서 소독한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와 화장실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헝겂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등은 세탁기에 세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 * 섬유세탁용 살균제(붙임6. 표3-3참조) 사용시 위해가스 발생, 옷감손상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60°C이하에서 사용**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사환자가 사용했던 매트리스, 베개,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매트리스,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 ☞ [붙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20.3.2.)
13. 청소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 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사람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참고자료 4

확진환자 및 접촉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분류	정의	조치사항	접촉자* 관리
확진환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중증도를 분류하여 입원 치료,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 조치	○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 *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
의사환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u>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u>	○ 고위험군,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또는 자가 격리 결정(역학조사관)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u>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u>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u>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u>	○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 (양성) 확진환자로 조치 - (음성) 증상 발현일(또는 입국일)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	-

*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거나 신고,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

□ 감염병 예방법

<참고>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0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타목에 따른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제2조제2호하목에 따른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액: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상한액 13만원 적용
- ② 생활지원비 금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 준용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기침, 재채기 등) 나타나면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외출, 타지역 방문 자제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어르신이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발열, 호흡기 증상이거나, 발열을 나타내면

-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고 외출, 타지역 방문 자제하기



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novel coronavirus infection

Recommendations for preventing infectious diseases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water especially your palms and under your fingernails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when coughing!



Wear a mask when visiting health facilities with respiratory symptoms (coughing, etc.)



Inform your travel history to medical staff when visiting health facilities



Please consult with the KCDC call center at 1339 if you are suspicious of contracting an infectious disease

Recommendations when travelling to affected area in China



Do not touch animals (including poultry)



Avoid visiting to local markets and health facilities



Do not contact with people who have a fever or respiratory symptoms (coughing, difficulty in breathing, etc.)



- Wear a mask when coughing
- Cover your mouth with your sleeve when coughing

Comply with personal hygiene recommendations



- Report the health questionnaire upon arrival, after travelling to infected regions in China
 - If you have a fever and respiratory symptoms within 14 days of returning to home
- Please consult with the KCDC call center at 1339 or public health center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4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즉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접이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 앞면을 향하도록 입에 넣기 전에 손가락을 씻으세요
- 2 마스크 앞면을 향하도록 입에 넣은 후 끈을 잡아 착용하세요
- 3 마스크를 사용 할때 위쪽을 고정시켜주세요
- 4 마스크를 사용 할때 아래쪽을 고정시켜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고 손을 씻으세요

컵형 제품 착용법

- 1 마스크를 사용 할때 위쪽을 고정시켜주세요
- 2 마스크를 사용 할때 아래쪽을 고정시켜주세요
- 3 끈 손잡이 부분을 잡고 머리 상단을 잡아 고정시켜주세요
- 4 머리 끈을 어깨에 고정시키고 아래쪽을 잡아 고정시켜주세요
-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고 손을 씻으세요
- 6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고 손을 씻으세요

출처 : 서울특별시건강안전관리소에 의뢰한 마스크 착용법 교육자료



		새	로	운		일	상		
생	활		속		거	리		두	기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일대다중이용시설' 및 '3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

30초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두 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2020.3.7.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통합심리지원단이 함께 합니다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근거림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불안하고
힘겨워해요



참고하고
회복이 안돼요



전혀 없는 기억들이
반복적으로 떠올라요



참고하지 못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요



평화고
흔들스러워요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거음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죠

감염병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극복하기 위한 대응지침을 확인하세요!

단어, 위와 같은 반응이 지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국민의당

02-3304-0001-2

국민의힘

1577-5109

095-525-2777



IV. 체크리스트 등 각종 서식

[서식 1] 코로나19예방 관련 체크리스트(사업장 자체 일일 점검용)

[서식 2] 건설공사장 출입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사업장 출입자 건강 체크용)

[서식 3] 소독 실시 대장(사업장 방역관리자 작성용)

[서식 4] 건설현장 노동자 건강 모니터링 서식(노동자 건강 체크용)

[서식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사업장 자체 점검용)

[서식 6]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사업장 방역관리자 자체점검표)

[서식 6-1]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서식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표(공사장 현장 점검시 체크용)

서식 1

코로나19예방 관련 일일 체크리스트

○ 사업장 명 :

구 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근로자 수 (명)	계								1회
	내국인								
	외국인								
비접촉 체온계 비치 비치 수량 및 이상유무									1회
근로자 체온측정 실시 여부									1회 (출근시)
고열 등 의심자 발생 유무									1회 (출근시)
예방교육 실시 여부 (손 씻기, 마스크착용 등)									1회 (출근시)
보건용 마스크 구매 지급	구 매								1회
	지 급								
세정제 비치 사용 여부 (세면장 등)									수시
현수막 설치 및 예방홍보물 부착 (세면장 등) 여부									1회
외국여행	사전 보고								출국전
	귀국 보고								출국후
체크리스트 활용 점검 이행 여부									일
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보고									주단위
기타 필요사항(의심자 발 생시 조치사항 이행여부)									

※ 조사대상 유증상자(출처 : 8판 코로나-19 효과적인 환자관리 및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응지침, 5. 14)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주요 임상증상 :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미실·소실, 폐렴 등

서식 5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건설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공사분야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남/여)	명(/)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자체 점검표

항목		자체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대 비 · 대 응 계 획	1) 사업장 내 감염대비·대응 계획 수립 여부 [필수사항]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관리 대책(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포함) - 확진환자,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대비 관리대책 등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조정, 재택근무 등	<input type="checkbox"/> 수립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수립 *필수사항 포함 되어야 수립 인정	
	2)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 여부	<input type="checkbox"/> 전담부서 지정 <input type="checkbox"/> 전담자 지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미지정	
사 업 장 위 생 관 리	1) 사업장 내 청결·소독 유지 관리 여부 * 중점 관리 시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다수 이용 시설 (기숙사, 통근버스 등이 있는 경우 위생관리 대상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구비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3)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 구비 및 비치 여부 *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개 인 위 생 관 리	1) 감염병 예방 관리 수칙(손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요령 등 노동자 교육 실시 여부 *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포함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2)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한 개인 위생 실천방안(손씻기, 기침 예절 등) 안내 여부 * 사업장, 영업소 등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부착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3) (고객응대노동자가 있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손소독제 비치 및 노동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 의료기관(응역, 돌봄서비스종사자 포함), 항공사, 마트 및 운수업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항목		자체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내용 (필요시 별지 활용)
감염유입 · 확산방지	1)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사업장 내 발열(37.5°C)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확인하는 상시 모니터링 실시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미해당	
	2) 최근 14일 이내 해외에서 입국한 소속 노동자가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2-1),2)로 <input type="checkbox"/> 없음	
	2-1)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발열(37.5°C)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2)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가 있다면) 입국 후 14일째 되는날 까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였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1)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소속 근로자나 방문고객 포함)가 발생 또는 사업장 방문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미이행 사유 작성) 대응·대비계획은 “미수립, 미지정”의 경우, 사업장위생관리, 개인위생관리는 “아니오”의 경우
(후속조치내용 작성) 감염유입·확산방지·기타는 “아니오” 또는 “있음”의 경우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0 . .

발 주 자 : 소속 직책 성명 (인)
감 리 사 : 소속 직책 성명 (인)
시 공 사 : 소속 직책 성명 (인)

서식 6

건설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점검일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방역관리자 :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가지 중 해당에 √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창문·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일 2회 이상 환기 가능	창문·출입문 통해 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직원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업장·흡연실·휴게실·구내식당 등)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 거리 유지 불가
(업무방식) 아프면 쉬거나 대체근무가 가능한가? (휴가, 병가, 재택근무 등)	대체로 가능	일부에 한해 가능	대체로 불가능
(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10명 미만	10명 이상 100명 미만	100명 이상
(활동도) 침방울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일반 사무공간)	적극적 침방울 발생(여론조사기관, 콜센터 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아래 항목에 √표시)	6개 모두 준수 (해당사업장 7개)	4개 이상 준수 (해당사업장 5개)	4개 미만 준수 (해당사업장 5개)
<input type="checkbox"/>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유증상자·확진자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매일 직원의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직원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는가?(사업장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input type="checkbox"/>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손위생 시설(세수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해당사업장만) 보호용구(작업복, 안전모, 고글, 안면보호구, 장갑, 신발 등)를 개인별로 사용하거나 공용사용시 매 사용시마다 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개선 및 참고 사항			
위험도 종합 평가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 등 자가점검표는 예시, 사업장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음

서식 6-1

사업장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예시)

점검항목	개선안(예시)
<p>(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울 농도 감소)</p>	<p>※(필수)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①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작업장,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출입구,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간면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주기적 환기를 위한 환기 담당자 지정 등 방법 활용</p>
<p>(밀집도) 직원 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가? (사람 간 거리 확보)</p>	<p>※(필수) 직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 ① 책상, 작업대, 의자의 간격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② 불가능한 경우,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배치, 작업대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거나 물리적 장벽(책상 칸막이 등) 활용 등 ③ 흡연실, 탈의실, 휴게 공간, 구내식당의 대기 줄 등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용 공간에서는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 ④ 회의·보고 전·후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p>
<p>(업무방식) 아프면 쉬거나 대체근무가 가능한가?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는 방안 마련)</p>	<p>※(필수) 직원 분산 등을 위해 근무 형태 안내 및 유도 ①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휴가제도 마련 및 활성화 ②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3분의1, 2분의1 등 사회적 거리 유지 가능한 비율) 근무(그 외 재택근무 등 활용) ③ 교대근무 시, 교대 조는 시간차를 두고 업무 공간 사용 ④ 사업장에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p>
<p>(군집도) 한 공간(사무실 등)을 동시에 사용하는 직원 규모는? (한 공간 내 동시 근무 인원 최소화)</p>	<p>※(필수)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p>
<p>(활동도) 침방울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행위 줄이기)</p>	<p>※(필수) 비말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 기침예절(기침 또는 재채기 시 휴지 혹은 옷소매 사용 후 손소독) 안내 ① 업무 공간 내 음식물 섭취 제한 ② 식사, 휴게 공간에서 개별용기 사용 및 음식 공유 자제 ③ 대면 접촉 감소를 위해 영상회의, 서면회의, 전화회의 등 활용, 불가피한 경우 참석인원 및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④ 지속적으로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p>

점검항목	개선안(예시)
	⑤ 밀폐된 공간 내,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대화 자제 등 침방울 발생 행위 자제 유도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는?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필수)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등)	※(필수) 매일 직원·방문자의 체온측정,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유무 확인 및 유증상자 관리
직원의 마스크 착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마스크 착용으로 침방울 튀 차단)	※(필수) 전 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 (사업장 내, 셔틀버스 안, 휴게실 등) - 코로나19는 침방울 튀므로 인하여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 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특히, 계속 말을 하는 업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 물품 매일 1회 이상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전파 차단)	※(필수)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 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 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 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필수) 손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 ① 사업장 곳곳에 손 소독제 비치, 안내문 부착하여 손 소독 유도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
직원(일용직 포함) 및 방문자 연락망 확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필수) 일시적 근무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 및 방문자의 연락망 확보 ① 확진자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이므로, 방문자 등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안내
(해당사업장) 보호용구를 개별적 사용 또는 사용 전·후 소독 (보호용구를 통한 감염 전파 예방)	※(필수) 개인보호용구 개별 사용 또는 공용사용시 사용 전·후 소독 철저 ① 개인방역수칙과 관련된 개인보호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안내문 부착, 안내 방송 등)

서식 7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보고서식)

- 공사현장명 :
- 공사분야(감독부서) : 토목, 건축, 설비 (0000부)
- 점검사항 “상황에 따라 일부 점검내용 변경 가능”

연번	점검대상	점검내용
1	○ 근로자 일일 근무현황	• 근로자 수 : 명(내국인 명, 외국인 명)
2	○ 비접촉 체온계	• 비접촉 체온계 보유 수량 : 개, 없음 • 작동상태(이상유무) 확인 : 이상없음, 작동불량 • 실제 사용 여부 확인 : 사용, 미사용
3	○ 보건용 마스크 관리	• 보건용 마스크 대장 등 관련 자료 확인(2. 1부터~ 점검일 기준) - 마스크 구입 수량 : 개, 구입횟수: 회 - 마스크 지급 수량 : 개, 지급횟수 : 회 - 마스크 보유량(점검일 기준) 개
4	○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교육실시 횟수 : 횟수, 교육인원(누계) 명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기간 : 점검일 기준 2개월 이내)
5	○ 비품 구입 및 홍보 여부	• 손세정제 비치 여부 : 개소 비치, 미비치 - 미비치시 사유 및 대응조치 내용(비누 비치 등) : • 현수막 게첨여부 및 예방수칙 게첨 여부(사무실, 세면장 등) - 현수막(게첨, 미게첨), 미게첨시 사유 : - 예방수칙 게첨 개소, 미게첨시 사유:
6	○ 일일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 일일 체크리스트 활용 여부 (활용, 미활용) - 미활용시 사유 :
7	○ 기 타 (미비점 보완, 우수사례 등)	• • •

점검일 : '20. . .

점검자 : 000부(00000과) 직급 : _____ (서명)

점검자 : 000부(00000과) 직급 : _____ (서명)